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15 발의연월일: 2020. 7. 23.

발 의 자: 민형배·송영길·박광온

윤재갑 • 이정문 • 이용빈

주철현 · 김민철 · 윤영덕

조오섭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,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·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,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행 「국회법」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.

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,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합니다(안 제39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 따른 공직자(국회의원은 제외한다)이었던 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원의 상임위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당선된 의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~	제39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
	따른 공직자(국회의원은 제외
	한다)이었던 의원은 임기가 개
	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
	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
	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
	<u>될 수 없다.</u>
④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